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92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이용우·강득구·박홍배

한정애 • 윤종오 • 황정아

진선미・김 윤・임오경

이학영 • 박민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활동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신고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도

록 하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로하여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하는 자에게 작성 제공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9조 등).

법률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하위사용자의 의무) 하위사용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사항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성평가"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을 "안전사용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사항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하위사용자의 의무) 하
	위사용자는 제10조에 따라 등
	록・신고된 사항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 변경신고된 사
	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	제24조(위해성평가) ①
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	
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위</u>	<u>전문가가</u>
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	참여하는 위해성평가
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	
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가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한다.

1. • 2. (생략)

② ~ ⑤ (생 략)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안전사용정		
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호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		
<u>등 환경부령</u>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54조(과태료) 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
	10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사
	항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등
	록・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